

#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52호
----------	--------

제출년월일 2026. 3. 6.  
제출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 및 사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용료의 반환 기준 확대 등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 일부 축소(안 제12조)
- 나. 공설장사시설의 최초사용 및 연장기간 단축(안 제13조)
  - 사용기간 단축에 따른 사용료 감액
- 다. 사용료 반환 범위 확대(안 제18조)
  - 연장 신고 시에도 사용료 반환 실시
- 라. 사용료에 대한 관외 사용자 기준 명확화(안 별표2)
- 마. 그 밖에 용어 및 조문 정비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6. 2. 10. ~ 2. 20.(1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원안 가결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라) 소비자정책심의 : 원안 가결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나) 경 기 도 : 노인복지과

##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직계 존·비속”을 “자녀”로, “포함한다)이”를 “포함한다),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망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제13조제1항제2호 중 “15년으로”를 “10년으로”로, “15년씩”을 “10년씩”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최초 안치에 한정하여 사용료 면제)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봉안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사용기간 및 연장 횟수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소	노인장애인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노인장애인과장 채재열
	팀장 직위·성명	노인시설팀장 석낙환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시설서기 이윤재(☎2215)

[별표 2]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제 14조 관련)

1. 공설묘지 등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관내	관외
공설묘지	단장	650,000	975,000
	합장	975,000	1,462,500
공동묘지	단장	50,000	75,000
	합장	75,000	112,500

2. 공설봉안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사용료		
			사용기간 15년	사용기간 10년	
무지개 뜨는 언덕	개인단	관내	500,000	330,000	
		관외	1,000,000	660,000	
	부부단	관내	900,000	600,000	
		관외	1,800,000	1,200,000	
김포시 추모공원	봉안담	개인단	350,000	230,000	
		관외	700,000	460,000	
	부부단	관내	600,000	400,000	
		관외	1,200,000	800,000	
	유택동산		관내	10,000	
			관외	50,000	
양택리 공설묘지 내 봉안묘		관내	650,000		
		관외	1,300,000		

3. 자연장지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사용료
김포시 추모공원 (자연장)	개인단	관내	800,000
		관외	1,600,000
	부부단	관내	1,500,000
		관외	3,000,000

비고

1. “관외”란 이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 또는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의 매장 또는 봉안 시 비석대, 표식대 등 수반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사용자의 범위) ① (생 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u></p> <p>1. 2. (생 략)</p> <p>3.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u>직계 존·비속(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신생아를 포함한다)</u> 이 사망하여 봉안을 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또는 타 봉안시설에서 이전 봉안하는 경우</p> <p>4. 5. (생 략)</p> <p>6. <u>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자</u></p> <p>③ ~ ⑤ (생 략)</p> <p>제13조(사용기간 등) ① 공설장사시설 내 분묘,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u>15년</u>으로</p>	<p>제12조(사용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u>-----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 <u>자녀</u>----- ----- <u>포함한다</u>), <u>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u> <u>가</u> ----- -----</p> <p>4. 5. (현행과 같음)</p> <p>6. <u>사망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용기간 등)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10년</u>으로</p>

하며, 1회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생략)

② ~ ⑤ (생략)

제14조(사용료) ① ~ ④ (생략)

⑤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에는 관외 요금을 적용한다.

⑥ (생략)

제15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2. (생략)

3.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최초 안치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② (생략)

제18조(사용신고 수리의 취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고 수리의 취소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연장 신고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 2. (생략)

----- 10년씩 -----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 (최초 안치에 한정하여 사용료 면제)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신고 수리의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단서 삭제>

1. 2. (현행과 같음)

[별표 2] (제14조 관련)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1. 공설묘지 등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관내	관외	인비잔 건석대 비대료
공설 묘지	단장 650,000	관내 거주자의 50% 가산 징수	사용자
	합장 975,000	〃	부담
공동 묘지	단장 50,000	관내 거주자의 50% 가산 징수	〃
	합장 75,000	〃	〃

2. 공설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화장 료	포식 대	유골 합	
양택리 공설묘지 내 봉안묘		관내 650,000 관외 1,300,000	사용자 부담			
김포시 추모공원	봉안담 (15년)	개인 단 관내 350,000 관외 700,000	사용자 부담			
		부부 단 관내 600,000 관외 1,200,000	사용자 부담			
		자연장 (30년)	개인 단 관내 800,000 관외 1,600,000	사용자 부담		
			부부 단 관내 1,500,000 관외 3,000,000	사용자 부담		
	유택동산	관내 10,000 관외 50,000	사용자 부담			
		무지개 뜨는 언덕 (15년)	개인 단 관내 500,000 관외 1,000,000	사용자 부담		
	부부 단 관내 900,000 관외 1,800,000		사용자 부담			

<신 설>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제14조 관련)

1. 공설묘지 등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관내	관외
공설묘지	단장 ----	975,000
	합장 ----	1,462,500
공동묘지	단장 ---	75,000
	합장 ---	112,500

2. 공설봉안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사용기간 15년	사용기간 10년	
무지개 뜨는 언덕	개인단	관내 500,000 관외 1,000,000	330,000 660,000	
		부부단	관내 900,000 관외 1,800,000	600,000 1,200,000
	김포시 추모공원		개인단	관내 350,000 관외 700,000
		부부단		관내 600,000 관외 1,200,000
유택동산			관내 10,000 관외 50,000	10,000 50,000
		양택리 공설묘지 내 봉안묘	관내 650,000 관외 1,300,000	650,000 1,300,000

3. 자연장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김포시 추모공원 (자연장)	개인단 관내 800,000 관외 1,600,000
	부부단 관내 1,500,000 관외 3,000,000

<신 설>

비고

1. “관외”란 이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 또는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의 매장 또는 봉안 시 비석대, 표식대 등 수반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고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 바. 형제·자매
-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9.>

1. “공설장사시설”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제10조 별표 1의 공설묘지 등을 말한다.<개정 2023.12.29.>
2. “공설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동묘지”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4.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관내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12.29.>

가. 사망 당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 당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 안(이하 “관내”라 한다)에 설치된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봉안·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3.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
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추진
5.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시행

제5조(지역수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관내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

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제6조(장사시설의 설치·구성 및 관리) ① 시장은 지역수급계획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구성 및 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해로부터 안전한 장사시설 관리
2.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설치·운영
3. 공원과 같은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
4. 시민 생활권과 조화를 이루어 친생활권 조성

② 시장은 사실 장사시설의 허가·취소·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제8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 1과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제9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등 위험지역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써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운영

제10조(명칭 및 위치) 시장이 운영하는 공설장사시설의 명칭·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사용신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내 주민으로 한다.<개정 2023.12.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배우자 중 1명이 공설장사시설에 매장 또는 안치되어 있는 경우로써 관외 거주하는 배우

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혼인증명서 또는 가족 관계증명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3.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신생아를 포함한다)이 사망하여 봉안을 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또는 타 봉안시설에서 이전 봉안하는 경우
4. 재해·재난 발생으로 사망한 경우
5. 무연고 행려자가 사망한 경우
6.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자<신설 2023.12.29.>

③ 공설장사시설 내 국가유공자묘역의 사용은 사망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④ 유택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망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는 관내 자격, 그 외 사망자는 관외 자격으로 한다.<개정 2023.12.29.>

1. 관련법에 따라 허가된 화장시설에서 화장된 유골을 유족이 산골하는 경우
2. 영 제6조에 따라 화장된 유골을 산골하는 경우

⑤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관내 장사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시장이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제13조(사용기간 등) ① 공설장사시설 내 분묘,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사용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분묘를 이장하는 경우에는 개장 전에 설치한 기간을 합산한다.
2.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회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3.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이며, 연장할 수 없다. 단, 부부단일 경우 마지막으로 안치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자연장지에 안치된 골분과 유택동산에 뿌려진 골분은 반환·반출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골분의 반환·반출은 허용하지 않는다.<신설 2023.12.29.>

⑤ 공설장사시설 내 안치된 유골이 사용자의 요청으로 인도 된 경우 반환된 유골은 다시 안치할 수 없다. 다만, 부부단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14조(사용료)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관내 공설·공공묘지의 재개발에 따라 다른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연장 신고의 경우에도 별표 2의 사용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사용료가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사용료를 적용한다.<개정 2023.12.29.>

⑤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에는 관외 요금을 적용한다.<개정 2023.12.29.>

⑥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않고 이장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4개월 사이의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23.12.29.>

제15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대상자<개정 2023.12.29.>

2.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 발생으로 사망한 자 또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3.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최초 안치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신설 2023.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여 공설장사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치한 경우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시장은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거나 반환 신청하지 않은 무연고 유골이 발생한 경우 5년간 봉안시설에 안치 후 유택동산 등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매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중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2.29.>]

제17조(사용관련 권리·의무의 승계) ① 신고자의 사망 등으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등의 권리·의무에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중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12.29.>]

제18조(사용신고 수리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신고에 따라 수리된 해당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2. 장사시설의 형태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3. 재개발로 인해 기존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사용신고에 따라 수리된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5.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관련 법령이나 조례, 규칙을 위반한 경우

② 사용신고 수리의 취소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고 수리의 취소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연장 신고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3.12.29.>

1. 재개발로 인해 기존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신고에 따라 수리된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12.29.>]

제1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2.29.>]

제20조(권한위임)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12.29.>]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12.29.>]

[별표 1] (제10조 관련) <개정 2023.12.29.>

##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종 류
초원지공설묘지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산14번지	공설묘지
포내공설묘지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산36번지	
양택공설묘지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109-6,7,8번지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신곡공동묘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산22번지	공동묘지
태리공동묘지	김포시 고촌읍 태 리 산55번지	
학운공동묘지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01-2, 323-1, 19, 20번지	
마송공동묘지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산37번지	
대능공동묘지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산41-1번지	
대벽공동묘지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산1번지	
울생공동묘지	김포시 대곶면 울생리 산117번지	
송마공동묘지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730, 736번지	
갈산공동묘지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산63, 산63-1번지, 산96-1번지	
마조공동묘지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산110번지	
원산공동묘지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676-4번지	
전류공동묘지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401-1번지	
김포시 추모공원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83-3,4,5번지 (도로명)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571번길 165	
무지개 뜨는 언덕	김포시 마산동 618-1 (도로명) 김포시 김포한강4로 419-39	공설봉안시설

[별표 2] (제14조 관련) <개정 2023.12.29.>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 1. 공설묘지 등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관내	관외	인건비	비석대	잔디료
공설묘지	단장	650,000	관내 거주자의 50% 가산 징수		사 용 자 부 담	
	합장	975,000	"			
공동묘지	단장	50,000	관내 거주자의 50% 가산 징수			
	합장	75,000	"			

### 2. 공설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관내	관외	사용료	화장료	표식대	유골함
양택리 공설묘지 내 봉안묘			관내		650,000			사용자 부담
			관외		1,300,000			
김포시 추모공원	봉안담 (15년)	개인단	관내		350,000			사용자 부담
			관외		700,000			
		부부단	관내		600,000			
			관외		1,200,000			
	자연장 (30년)	개인단	관내		800,000			사용자 부담
			관외		1,600,000			
		부부단	관내		1,500,000			
			관외		3,000,000			
	유택동산		관내		10,000			사용자 부담
			관외		50,000			
무지개 뜨는 언덕 (15년)		개인단	관내		500,000			사용자 부담
			관외		1,000,000			
		부부단	관내		900,000			
			관외		1,800,000			

**붙임 3****규제심사결과**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김포\*

**김 포 시**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노인장애인가-58273(2025. 12. 31.)호와 관련, 2026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심 의 일 : 2026. 1. 7.(수)/ 서면심의
2. 심의안건 :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규제강화 심사)
3. 심의결과

의안 번호	안건명	의결사항	
		규제사무 내용	심의 결과
2026-01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제6호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범위 축소)	원안 가결

끝.

**정책 기획 과 촌 미**

수신자 예산법무과장, 노인장애인가과장

주무관 박은지 70상상팀장 조성배 정책기획과장 권길 2026. 1. 7. 이금미

협조자

시행 정책기획과-449 (2026. 1. 7.) 접수 노인장애인가-1255 (2026. 1. 7.)

우 10106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로 1, 3층 정책기획과(사우동) / <http://www.gimpo.go.kr>

전화번호 031-980-2792 팩스번호 031-980-2099 / paikgoooo@korea.kr / 비공개(5)

\* 소중한 개인정보, 지키면 즐거워요! \*

# 붙임 4

# 소비자정책심의결과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김포"



## 김포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5년 제5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2025년 제5회 김포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심의일시 : 2025. 11. 13.(목) 16:00
2. 심의장소 : 본관 2층 소회의실2
3. 심의위원 : 위원장(부시장) 등 8명(전체 위원수 12명)
4. 심의결과

심의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제안부서
2025-7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범위 확대	원안가결	노인장애인과
2025-8	김포한강 스포츠센터 요금체계 개편	원안가결	자원순환과
2025-9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고정식 농기계 사용료 규정	원안가결	농업진흥과
2025-10	「김포시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및 체험료 변경	원안가결	산림과

붙임 심의의견서 4건(안건별). 끝.

### 김포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신자 노인장애인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진흥과장), 김포시농원도시사업본부장(산림과장)



-----

담당자 서기 17. 이재근      감사 박희숙      전결

협조자

시행 (2025. 11. 18.)      접수 노인장애인과-50280      (2025. 11. 18.)

주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제3빌관 4층(사우동)      / <http://www.gimpo.go.kr>

전화번호 031-980-5257      팩스번호 031-980-2799      / [lgandy111@korea.kr](mailto:lgandy111@korea.kr)      / 비공개(5)

\* 소중한 개인정보, 지키면 즐거워요! \*